

[] 저작물 [] 실연 [] 음반 [] 방송 이용 승인신청서 [] 데이터베이스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		40일

① 제 호(제목)	※ 공표시 표시된 제호를 기재합니다. ([] 여러 건 신청 : 총 건)
② 종 류	
③ 형태 및 수량	
④ 이용의 내용	※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.
⑤ 승인신청사유	※ '권리자 거소 확인 불가' 등 해당 사유를 기재합니다.
⑥ 보 상 금 액	

신청인	⑦ 성명(법인명)	⑧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⑨ 주소	⑩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대리인	⑪ 성명(법인명)	⑫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⑬ 주소	⑭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
「저작권법」 제50조·제51조·제52조·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(저작물·실연·음반·방송·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·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) 1부 보상금액산정내역서 1부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1부 저작권산권자·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(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협약에 관한 경과서류(협약이 성립되지 않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(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	수수료(1건) 10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